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timefolio.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 2023.12.0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01.16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0년 12월 02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2023.12.06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DC79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주식가격 하락위험 ,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대상자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46	0.60	1.36	1.47	248	400	559	893	1,834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없음	1.81	0.95	1.58	1.82	184	375	571	983	2,136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1.16	0.30	1.01	1.17	168	290	418	686	1,453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없음	1.33	0.47	1.18	1.34	136	277	422	730	1,60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 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20.12.02	0.78	-9.55	2.98	0	3.62
비교지수(%)	-	4.27	-8.39	-2.97	0	-1.78
수익률 변동성(%)	2020.12.02	16.71	16.95	17.98	0	17.98

(주1) 비교지수 : KOSPI*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강현담	1988	이사	20개	23,544억원	2.61	-7.93	11.34	-7.71	9년 1개월
부책임 이찬휘	1986	이사	4개	1,453억원	2.61	-7.93	11.34	-7.71	7년 3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 (D+3)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 (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imefolio.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 투자업자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번호: 02-533-894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imefolio.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16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청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가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I)	기관투자자 등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업자(s)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imefolio.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imefolio.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DC79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DC79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DC79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DC7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DC7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DC7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DC7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I)	DC79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DC8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형(C-s)	DC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DC8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DC8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DC8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DC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DC8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DC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DC80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 모자형 :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종류형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

모집(판매)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DC79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DC79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DC79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DC7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DC7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DC7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DC7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I)	DC79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DC8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형(C-s)	DC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DC8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DC8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DC8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DC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DC8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DC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DC80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짜	주요내용
2020.12.02	최초설정
2022.02.08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2023.01.20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4.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제89조, 제9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81조, 제93조, 제223조, 제269조)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3.02.20 시행)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제59조의3, 2023.01.01 시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9층 (우 07325) ☎02-533-894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현담	1988	이사	20개	23,544억원	2.61	-7.93	11.34	-7.71	9년 1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운용규모
-서울대 경영학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4.06~현재)					18개				17,164억원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찬휘	1986	이사	4개	1,453억원	2.61	-7.93	11.34	-7.71	7년 3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운용규모
-서울대 수학교육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6.09~현재)					3개				589억원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 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5) “운용경력”은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1) 운용전문인력

기간	책임 운용전문인력
-	-
기간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	-

주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90% 이상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

연금(P)	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가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I)	기관투자자 등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업자 (s)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클래스별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③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①~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할 수 있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⑦	증권의 대여 ^{주1)}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⑧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차입
⑨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한다)
⑩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⑫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⑬	환매조건부매수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④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⑤~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가.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 할 수 있음
-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대상 세부설명
이해관계인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

	<p>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p>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제외
①	이해관계인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 투자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최초 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투자 (예외)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 	

		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집합 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 초 설 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지분 증권총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 초 설 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②~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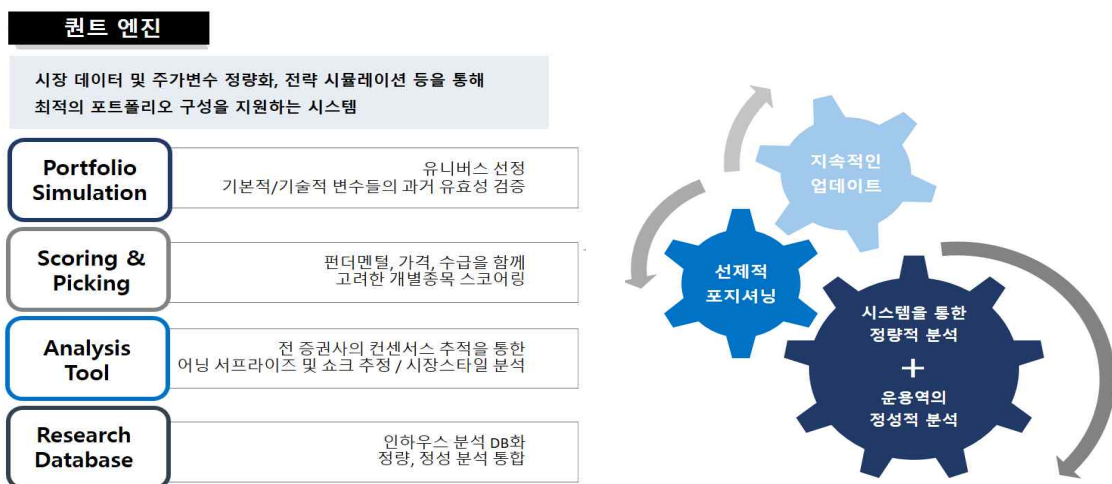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관리에 준하게 되므로 아래 모투자신탁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할 예정이며, 주로 신성장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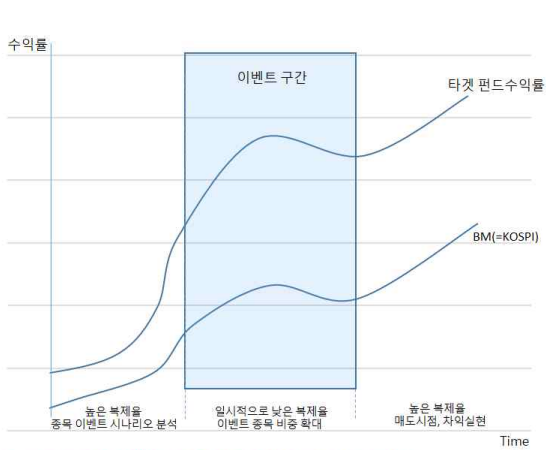
▶ Two Track 운용 전략 - 1) 새로운 산업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여 신성장 섹터의 대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



- ▶ Two Track 운용 전략 - 2) 이벤트 드리븐 : 시장의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투자전략 병행

<투자방침>

- ▶ TOP-DOWN 리서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산업과 종목 발굴
- ▶ 자체 시스템의 정량적 보조 지표와 운용팀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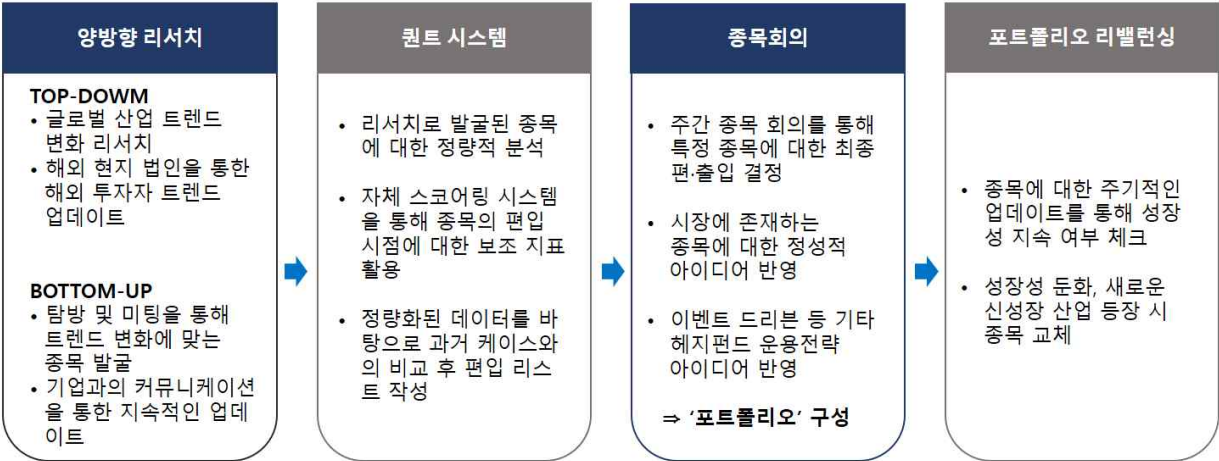


※ 상기의 그래프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한 예시 참고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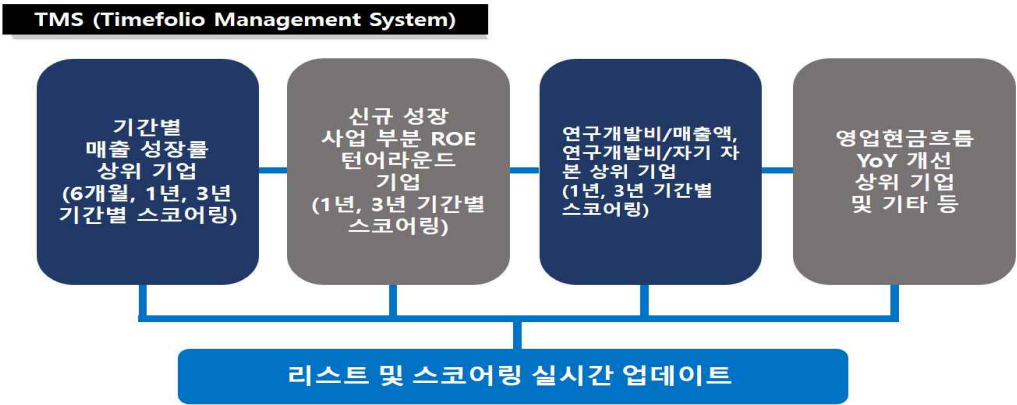
운용 전략

- 증시의 다양한 이벤트와 관련하여 많은 케이스 스터디와 매매 경험 활용
- ✓ 기업의 분할 및 합병
 - ✓ 종목 이전상장 및 인덱스 편·출입 이슈
 - ✓ 지주사 이벤트 및 경영권 분쟁

운용 프로세스



- ▶ 유니버스 구성 주요 타겟 기업



상기 투자전략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등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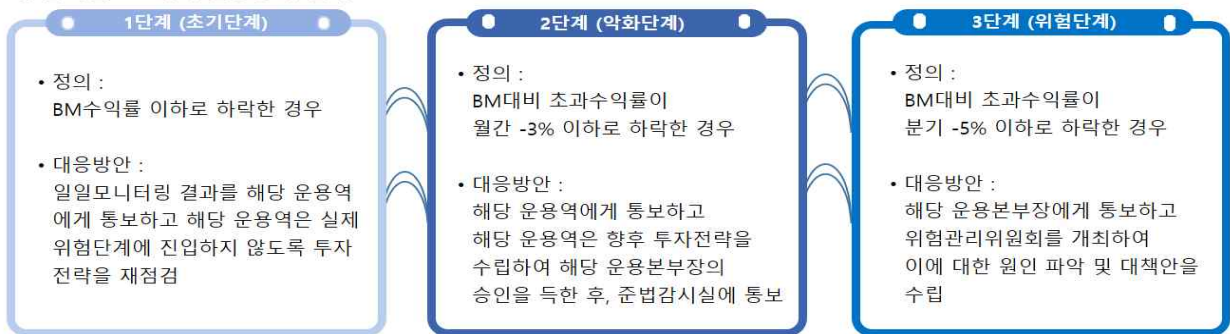
- ▶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 ▶ 당사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각 단계별 위험관리

✓ TMS(Timefolio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

펀드	BM대비	Risk Factor				
		SD	IR	Sharpe Ratio	Beta	MDD
A	15.0	14.2	0.8	2.0	0.40	18.8
B	10.9	13.6	0.6	1.8	0.38	17.6
C	12.3	13.0	0.6	2.0	0.36	16.1
D	11.3	12.7	0.6	1.9	0.34	16.3
E	9.7	13.3	0.5	1.7	0.38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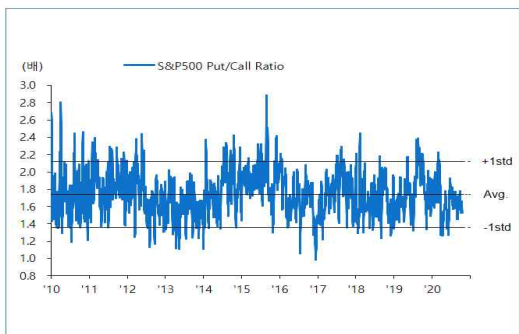
※ 위의 모니터링 화면은 예시이며, 시장상황 및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BM대비 운용성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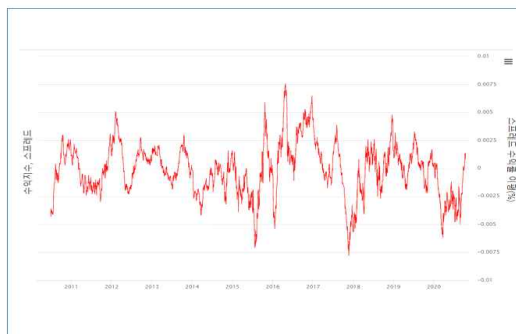
시장의 과도한 낙관과 비관의 역이용

중시의 과도한 낙관과 비관에 대하여 Put/Call Ratio 및 시스템 내부 낙폭 관련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편입 비중 관리



과도한 스타일 쏠림의 역이용

과거 시장 스타일 쏠림을 정량화하여 contrarian(역발상 아이디어) 종목의 비중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편입



나.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100%

상기 비교지수는 향후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 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및 매매·평가손익, 채권투자시 매매·평가손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대차 거래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로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 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18.03%**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4.01.16	2등급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

■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위험등급	분류기준	표준편차
1	매우 높은 위험	25% 초과
2	높은 위험	15% 초과 25% 이하
3	다소 높은 위험	10% 초과 15% 이하
4	보통 위험	5% 초과 10% 이하
5	낮은 위험	0.5% 초과 5%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0.5% 이하

※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에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청구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온라인 가입자	납입금액의 0.5%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납입금액의 0.7%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제한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온라인 가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I)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형(C-s)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기산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자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9)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 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이란 이익분배금 전액이 재투자되지 않고 누적된 기준가격(세전 기준)입니다. 즉,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세전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timefolio.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장부가액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①~⑦외의 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형(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이내	-		-
수수료선취 -온라인형 (A-e)	온라인 가입자	납입금액의 0.5%이내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 용형(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납입금액의 0.7%이내	-	-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제한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온라인 가입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l)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형(C-s)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	-	-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 사 보수	신탁회 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 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 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8	0.6	0.03	0.03	1.46	0.004	1.464	1.36	1.466	0.73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8	0.3	0.03	0.03	1.16	0.004	1.164	1.01	1.166	0.7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0.8	0.42	0.03	0.03	1.28	0	1.28		1.28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8	0.95	0.03	0.03	1.81	0.004	1.814	1.58	1.816	0.7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8	0.47	0.03	0.03	1.33	0.004	1.334	1.18	1.336	0.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0.8	0.66	0.03	0.03	1.52	0.003	1.523		1.524	0.7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I)	0.8	0.03	0.03	0.03	0.89	0.004	0.894		0.896	0.71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8	0.29	0.03	0.03	1.15	0.004	1.154		1.156	0.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8	0.01	0.03	0.03	0.87	0.004	0.874		0.876	0.72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인-집합투자업자형(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8	0	0.03	0.03	0.86	0.004	0.864		0.866	0.7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8	0.8	0.03	0.03	1.66	0.004	1.664		1.666	0.7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8	0.4	0.03	0.03	1.26	0.004	1.264		1.266	0.7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0.8	0.24	0.03	0.03	1.1	0.004	1.104		1.106	0.7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0.8	0.7	0.03	0.03	1.56	0.004	1.564		1.566	0.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0.8	0.35	0.03	0.03	1.21	0.004	1.214		1.216	0.7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0.8	0.23	0.03	0.03	1.09	0.004	1.094		1.096	0.745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12.02 - 2023.12.01.]

※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펀드결제수수료(과세)	2,392,530
회계감사비(과세)	4,297,490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12.02 - 2023.12.01.]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REPO중개수수료(과세)	905,616
대차중개수수료(과세)	129,313

주3) 모두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해당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12.02 - 2023.12.01.]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 (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천원)

수익증권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7	400	558	891	1,8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8	400	559	893	1,834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290	416	684	1,4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	290	418	686	1,45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9	334	473	766	1,6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9	334	473	766	1,6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4	374	570	981	2,1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4	375	571	983	2,136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5	276	421	728	1,59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77	422	730	1,60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314	480	828	1,8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5	315	481	829	1,81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형(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1	185	284	493	1,0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1	186	285	495	1,098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	255	382	632	1,3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	256	383	634	1,39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집합투 자업자형 (C-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9	181	277	482	1,0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9	182	279	484	1,07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179	274	476	1,0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	180	275	478	1,06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	343	523	901	1,9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9	344	524	903	1,96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1	399	691	1,5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9	262	401	693	1,5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9	349	605	1,3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3	229	351	608	1,34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 (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9	323	492	849	1,8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9	323	493	851	1,85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 (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1	384	664	1,4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4	252	385	666	1,46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 (S-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1	226	346	600	1,3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7	348	602	1,330

- 주1) 위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 A 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와 종류 C-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 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A, 종류A-e, 종류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 납입금액의 0.7%]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종류S] 수익증권은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 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 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 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P, C-Pe, S-P 가입자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 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Class S-P2(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적용 사례는 아래 예시들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050원	10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50원*세율(15.4%)=7.7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50원	950원
손익	(-)50원	(-)50원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0'원
----	--	-------------------

예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50원	10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50원*세율(15.4%)=7.7원

예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050원	9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0'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3기(2022.12.02 ~ 2023.12.01)	우리회계법인	적정
제2기(2021.12.02 ~ 2022.12.01)	우리회계법인	적정
제1기(2020.12.02 ~ 2021.12.01)	우리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3기(23.12.01)	2기(22.12.01)	1기(21.12.01)
운용자산	97,748	117,497	142,718
증권	97,635	117,075	141,67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3	322	243
기타운용자산	0	100	800
기타자산	1,345	2,127	12,139
자산총계	99,093	119,624	154,85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29	794	8,385
부채총계	429	794	8,385
원본	88,046	104,122	112,81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10,617	14,707	33,661
자본총계	98,664	118,830	146,472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3기(22.12.02~23.12.01)	2기(21.12.02~22.12.01)	1기(20.12.02~21.12.01)
운용수익	338	-19,581	5,828
이자수익	11	9	2
배당수익	1,328	2,006	2,208
매매/평가차익(손)	-1,001	-21,598	3,61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474	1,878	1,207
관련회사보수	1,469	1,873	1,203
매매수수료	2	3	1
기타비용	2	2	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당기순이익	-1,135	-21,460	4,621
매매회전율	875	593	680

(주1)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내역 없음)

(주3)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내역 없음)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1.92

(주1)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	0	0	0	0	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	0	0	0	0	0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0	0	0	0	0	0
장외파생상품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0

(주1) 거래비용은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생략 가능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항목	3기(23.12.01)	2기(22.12.01)	1기(21.12.01)
운용자산	97,748	117,497	142,718
증권	97,635	117,075	141,674
주식	0	0	0
ETF	0	0	0
채권	0	0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97,635	117,075	141,674
외화유가증권	0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3	322	243
예금	113	322	243
외화예금	0	0	0
CD	0	0	0
정기예금	0	0	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100	80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	0	100	800
기타자산	1,345	2,127	12,139
미수이자		0	0
미수배당금	1,328	2,006	2,208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16	120	9,931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99,093	119,624	154,858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429	8,385	794
미지급보수	317	445	362
미지급해지금	16	7,634	121
미지급이익분배금	93	303	308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2	2	2
부채총계	429	8,385	794
원본	88,046	112,810	104,12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10,617	33,661	14,707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98,664	146,472	118,830

다.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항목	3기(22.12.02~23.12.01)	2기(21.12.02~22.12.01)	1기(20.12.02~21.12.01)
운용수익	338	-19,581	5,828
투자수익	1,339	2,016	2,21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이자수익	11	9	2
배당수익	1,328	2,006	2,208
기타수익	0	0	0
매매이익	2,082	1,301	5,422
주식매매이익	0	0	0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2,082	1,301	5,422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3,084	22,899	1,804
주식매매손실	0	0	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3,084	22,899	1,804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1,474	1,878	1,207
위탁보수비	895	1,128	702
판매보수비	507	660	448
수탁보수비	33	42	26
사무관리보수비	33	42	26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2	3	1
기타비용	2	2	2
당기순이익	-1,135	-21,460	4,621
비용	4,558	24,778	3,012
수익	3,422	7,633	3,317
천좌당 순이익(원)	-8	70	-13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49	49	75,735	97,710	25,033	33,356	50,751	64,402	0
21.12.02~ 22.12.01	50,751	67,003	21,808	28,468	26,472	33,221	46,087	62,250	68
22.12.02~ 23.12.01	46,087	53,064	11,466	13,397	19,864	23,805	37,689	42,655	17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59	59	9,420	12,119	3,734	4,905	5,745	7,272	0
21.12.02~ 22.12.01	5,745	7,584	2,784	3,533	1,270	1,636	7,259	9,481	29
22.12.02~ 23.12.01	7,259	8,344	1,699	2,022	2,122	2,520	6,836	7,845	4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0	0	0	0	0	0	0	0	0
21.12.02~ 22.12.01	0	0	0	0	0	0	0	0	0
22.12.02~ 23.12.01	0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22	22	29,860	39,177	16,075	21,223	13,806	17,975	0
21.12.02~ 22.12.01	13,806	18,183	2,059	2,612	10,116	11,170	5,749	9,625	0
22.12.02~ 23.12.01	5,749	6,582	610	720	1,275	1,528	5,083	5,775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2	2	7,906	10,245	3,074	4,069	4,833	6,177	0
21.12.02~ 22.12.01	4,833	6,381	2,872	3,598	2,234	2,742	5,471	7,237	14
22.12.02~ 23.12.01	5,471	6,290	1,050	1,236	1,595	1,859	4,926	5,668	18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30	30	0	0	0	0	30	30	0
21.12.02~ 22.12.01	30	28	0	0	0	0	30	28	0
22.12.02~ 23.12.01	30	24	0	0	0	0	30	24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I)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500	500	17,539	23,633	2,605	3,446	15,433	20,687	0
21.12.02~ 22.12.01	15,433	20,376	4,627	5,790	2,345	2,561	17,715	23,605	135
22.12.02~ 23.12.01	17,715	20,369	4,144	4,951	6,517	7,695	15,342	17,626	15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37	37	9,820	12,097	5,208	6,875	4,649	5,259	0
21.12.02~ 22.12.01	4,649	6,143	1,201	1,525	1,638	2,065	4,212	5,602	19
22.12.02~ 23.12.01	4,212	4,850	361	423	1,720	2,041	2,853	3,232	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형(C-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500	500	0	0	0	0	500	500	0
21.12.02~ 22.12.01	500	660	3	4	0	0	503	664	4
22.12.02~ 23.12.01	503	578	3	4	0	0	507	583	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35	35	10,288	10,833	2,235	2,359	8,087	8,509	0
21.12.02~ 22.12.01	8,087	8,457	4,269	4,472	9,532	9,142	2,823	3,787	0
22.12.02~ 23.12.01	2,823	2,591	1,919	1,866	3,844	3,608	899	85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2	2	1,714	2,225	499	683	1,216	1,543	0
21.12.02~ 22.12.01	1,216	1,605	304	376	37	48	1,484	1,933	0
22.12.02~ 23.12.01	1,484	1,704	159	183	129	154	1,513	1,733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7	7	3,422	4,462	1,150	1,548	2,279	2,921	0
21.12.02~ 22.12.01	2,279	3,009	2,291	2,882	971	1,210	3,598	4,681	8
22.12.02~ 23.12.01	3,598	4,136	1,315	1,546	1,149	1,361	3,764	4,321	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1	1	790	976	332	439	459	538	0
21.12.02~ 22.12.01	459	606	279	338	223	276	515	668	2
22.12.02~ 23.12.01	515	592	265	312	387	460	394	444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3	3	1,885	2,320	301	401	1,587	1,922	0
21.12.02~ 22.12.01	1,587	1,990	917	1,096	345	388	2,160	2,699	1
22.12.02~ 23.12.01	2,160	2,358	261	304	419	459	2,002	2,203	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1	1	4,365	5,676	1,159	1,533	3,207	4,144	0
21.12.02~ 22.12.01	3,207	4,151	4,465	5,514	1,447	1,699	6,224	7,966	15
22.12.02~ 23.12.01	6,224	7,014	2,038	2,370	2,251	2,671	6,011	6,713	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 21.12.01	0	0	0	0	0	0	0	0	0
21.12.02~ 22.12.01	221	290	121	149	57	71	285	368	1
22.12.02~ 23.12.01	285	326	67	77	161	190	191	214	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수익률, 기준일 : 2023.12.06)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가. 연평균수익률

(단위:%, 기준일: 2023.12.06.)

펀드명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이후
		22.12.07~ 23.12.06	21.12.07~ 23.12.06	20.12.07~ 23.12.06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	2020-12-02	2.59	-7.91	4.84	0	5.49
수익률변동성	-	16.71	16.95	17.98	0	17.98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A-e	2020-12-02	1.42	-8.96	3.65	0	4.2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AG	2020-12-17	0	0	0	-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e	2020-12-02	1.25	-9.12	3.47	0	4.1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G	2021-08-25	1.07	-9.29	0	0	-9.3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I	2020-12-02	1.69	-8.72	3.93	0	4.57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s	2020-12-02	1.71	-8.7	3.95	0	4.5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Pe	2020-12-02	1.32	-9.05	3.54	0	4.18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A	2020-12-02	1.13	-9.23	3.34	0	3.98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	2020-12-02	0.78	-9.55	2.98	0	3.6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P	2020-12-02	0.93	-9.42	3.13	0	3.77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S	2020-12-02	1.43	-8.95	3.66	0	4.2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w	2021-02-02	1.73	-8.69	0	0	-3.6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S-P	2020-12-02	1.48	-8.91	3.71	0	4.35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P2	2020-12-29	1.03	-9.32	2.19	0	2.1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C-P2e	2020-12-16	1.37	-9.01	0	0	3.6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 (주식)종류S-P2	2020-12-04	1.49	-8.9	3.72	0	4.13
비교지수		4.27	-8.39	-2.97	0	-1.78

(주1)비교지수: KOSPI*100%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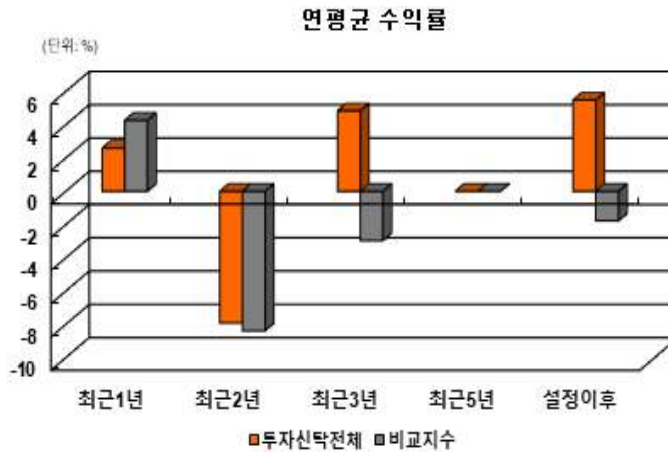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주4)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이후” 수익률은 각 클래스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 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로 표기됩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연도별수익률

(단위:%, 기준일:2023.12.06)

펀드명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2.12.07~23.12.06	21.12.07~22.12.06	20.12.07~21.12.06	-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2.59	-17.33	35.89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A-e	1.42	-18.29	34.35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AG	0	0	0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e	1.25	-18.43	34.12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G	1.07	-18.58	-9.87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I	1.69	-18.07	34.72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s	1.71	-18.05	34.74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Pe	1.32	-18.37	34.22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A	1.13	-18.53	33.96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	0.78	-18.82	33.5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0.93	-18.7	33.68	0	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P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43	-18.28	34.36	0	0
종류S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73	-18.04	9.52	0	0
종류C-w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48	-18.24	34.43	0	0
종류S-P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03	-18.61	29.62	0	0
종류C-P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37	-18.33	35.08	0	0
종류C-P2e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1.49	-18.23	34.44	0	0
종류S-P2					
비교지수	4.27	-19.51	8.85	0	0

(주1) 비교지수: KOSPI*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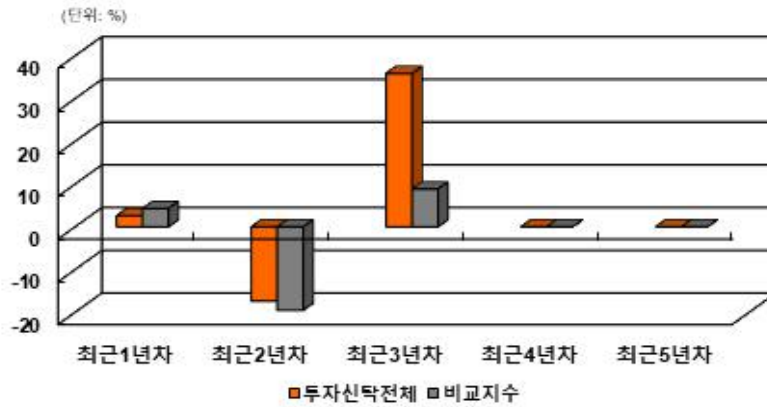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단위: 백만원,%)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통화 구분 (23.12.01)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원)	90,632	0	0	4,568	0	0	0	0	0	312	3,582	99,093
비중	91.46	0.00	0.00	4.61	0.00	0.00	0.00	0.00	0.00	0.31	3.61	
합계	90,632	0	0	4,568	0	0	0	0	0	312	3,582	99,093
	91.46	0.00	0.00	4.61	0.00	0.00	0.00	0.00	0.00	0.31	3.6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주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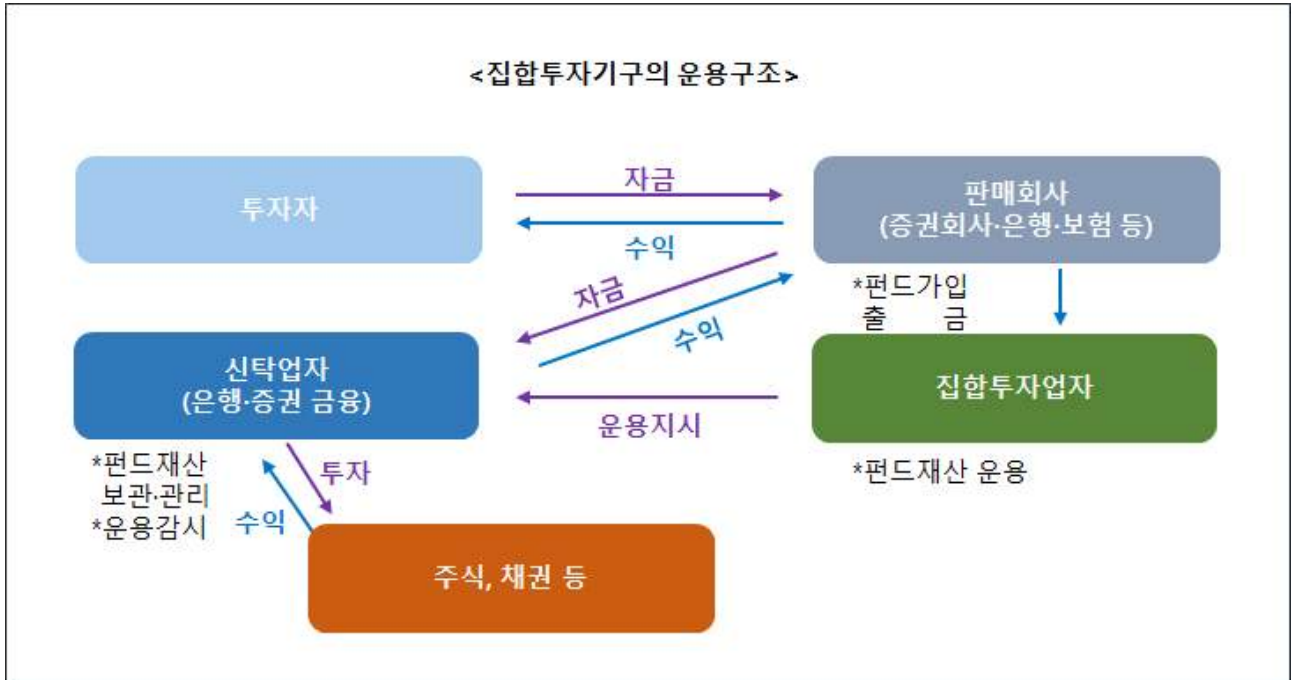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통화 구분 (23.12.01)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원)	0	0	0	97,636	0	0	0	0	0	113	1,345	99,093
비중	0.00	0.00	0.00	98.53	0.00	0.00	0.00	0.00	0.00	0.11	1.36	
합계	0	0	0	97,636	0	0	0	0	0	113	1,345	99,093
	0.00	0.00	0.00	98.53	0.00	0.00	0.00	0.00	0.00	0.11	1.36	

(주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9층 (여의도동) 02-533-8940
홈페이지 주소	www.timefolio.co.kr
자본총계	1,476억원 (2023년 03월 31일 기준)
주요주주 현황	황 성 환 외
회사연혁	2006-05-15 회사설립(주)타임폴리오앤컴퍼니(자본금 3억, 대표이사 황성환) 2008-07-27 상호변경(주)타임폴리오투자자문 2008-07-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등록번호 08-03-329) 2016-04-29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2016-07-15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록

	2018-08-07 싱가포르 해외법인 설립 (SGD 4,000,000) - TIMEFOLIOASSETMANAGEMENTSINGAPOREPTE.LTD. 2019-02-08 싱가포르 해외법인 자산운용업 인가 취득 2019-07-24 증권펀드집합투자업 (3-11-1) 인가 취득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자) ※ 삼성증권은 당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자본시장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자)입니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과목	2023.03.31	2022.03.31	과목	2022.04.01.~ 2023.03.31	2021.04.01.~ 2022.03.31
현금 및 예치금	1,183,100,794	1,219,147,543	영업수익	52,071,418,508	106,423,620,270
유가증권	147,896,785,989	165,445,892,549	영업비용	39,190,346,148	50,110,110,374
유형자산	12,120,234,199	12,342,808,939	영업이익	12,881,072,360	56,313,509,896
기타자산	13,472,373,085	11,951,479,173	영업외수익	18,765,705,276	20,205,793,053
자 산 총 계	174,672,494,067	190,959,328,204	영업외비용	20,056,419,633	9,764,016,62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차입부채	6,487,549,065	5,999,419,620	법인세차감전이익	11,590,358,003	17,321,441,324
기타부채	20,566,921,306	39,353,508,473	당기순이익	7,897,315,679	49,433,844,996
부 채 총 계	27,054,470,371	45,352,928,093	/		
자본금	5,410,220,000	5,410,220,000			
자본잉여금	7,774,257,080	7,774,257,080			
기타자본	(12,320,849,784)	(12,340,951,690)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146,754,396,400	144,762,874,721			
자 본 총 계	147,618,023,696	145,606,400,111			

라. 운용자산 규모 (2023.12.06 기준 / 단위: 억원,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종류	증권						단기 금융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기타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3,612	0	0	0	5,516	0	0	0	0	22,883	0	32,01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해당사항 없음
-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 1577-8000)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hinhan.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44층 (☎ 02-769-7855)
홈페이지 참조	https://korfp.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 02-2251-13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회 사 명	키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4층 (☎ 02-3215-14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bond.co.kr
회 사 명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02-721-53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 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 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신탁계약서 제37조에 따른 보수율로 6개월간 계산한 금액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 제4항 및 제5항과는 별도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명세서/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 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

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 증권 거래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거래 등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

	<p>체결능력</p> <p>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p> <p>4. 세미나, 기업탐방, NDR, IR, AI 딜 등</p> <p>• 회사는 투자중개업자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분기단위로 수립하고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투자중개업자에 매매를 위탁한다.</p> <p>• 투자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p>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투자목적: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5억원
-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 ② 소규모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 의무투자기간이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투자 의무를 승계

주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3) 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 합니다.

[붙임] 용어정리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 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집합투자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 매입 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당해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 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